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준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21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1일

발 의 자: 정준호, 김길영, 김성준,
김영철, 김재진,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강산, 박승진, 박영한,
박춘선, 박철성, 서상열,
송경택, 신복자, 아이수루,
, 왕정순, 유정희, 윤영희,
윤종복,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임규호,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의원(30명)

1. 제안이유

-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육포기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또한, 피학대동물 등 동물보호 비용에 관한 소요경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관련하여 정의부분을 신설하는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육포기 동물’, ‘동물학대’, ‘기질평가’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 나. 사육포기 동물 인수 대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8조).
- 다. 동물 보호비용의 부담 및 소유자등의 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 라.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수행할 수 있는 범위로 사육포기 동물 및 기질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육포기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워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인수를 요청한 동물을 말한다.

10.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3항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시행령””을 ““영””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단서 중 “시행령 제5조”를 “영 제5조”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영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법 시행령 제6조”를 “영 제6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시행령 제9조”를 “영 제9조”로 한다.

제16조제5항제1호 중 “시행령 제5조”를 “영 제5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시행령 제5조”를 “영 제5조”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소요경비의 징수)”를 “(사육포기 동물 인수 등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유자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워 동물 인수신청서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해당 동물을 인수할 수 있다.

1.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2. 소유자등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3.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소유자등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5. 소유자등이 수감으로 동물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6.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7.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인수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 등 적절한 시설에 보호조치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보호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소요경비 등의 징수)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42조제3항 및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동물보호센터에 지급되는 마리 당 보호비용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에 따른 예산지원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보호하는 경우 피학대동물의 소유자등에게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보호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하는 경우 또는 소유자등이 경제적 사정상 비용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종전의 제23조) 제2항제2호 중 “긴급보호동물”을 “사육포기 동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5조(종전의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행령 제5조”를 각각 “영 제5조”로 한다.

4.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4조에 따른 기질평가

7. 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의 동물 의료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7. (생 략)</p> <p>8. “<u>긴급보호동물</u>”이란 <u>소유자의 사망, 구급 등의 사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긴급히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말한다.</u></p> <p>9.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사육포기 동물</u>”이란 「<u>동물보호법 시행규칙</u>」(이하 “<u>시행규칙</u>”이라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u>소유자등이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워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인수를 요청한 동물을 말한다.</u></p> <p>9. (현행과 같음)</p> <p>10. “<u>동물학대</u>”란 동물을 대상으로 <u>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u></p> <p>11. “<u>기질평가</u>”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u>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u></p>

10. ~ 12. (생 략)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②
(생 략)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 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동물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평가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 추천인사 및 명예 동물보호관이 참여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10조(동물의 구조·보호) ①·②
(생 략)

12. ~ 14. (현행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시행
규칙 -----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영”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동물의 구조·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1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동물생명존중헌장 및 동물보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

제12조(동물생명존중헌장 및 동물보

호의 날) ①·② (생 략)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서울 동물 보호의 날에 적합한 행사 개최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유기동물의 입양 및 분양·기증) ① (생 략)

② 시장은 분양·기증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며 걱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양·기증을 받는 사람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6조(동물의 반환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45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3. (생 략)

제17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생 략)

호의 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영 제6조-----
-----.

제15조(유기동물의 입양 및 분양·기증) ① (현행과 같음)

② -----

----- 영 제9조-----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동물의 반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영 제5조-----

2. 3. (현행과 같음)

제17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 자치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8조(소요경비의 징수) 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은 구조·보호한 동물 마리당 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단,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보호하는 경우 피학대동물의 소유자에게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 ----- 영 제5조 -----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육포기 동물 인수 등 관리)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유자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워 동물 인수신청서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해당 동물을 인수할 수 있다.

1.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2. 소유자등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3.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 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

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소유자등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5. 소유자등이 수감으로 동물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6.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7.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인수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 등 적정한 시설에 보호조치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보호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소요경비 등의 징수)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42조제3항 및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동물보호센터에 지급되는 마

<신 설>

<신 설>

리 당 보호비용을 기준으로 보호 기간에 따른 예산지원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보호하는 경우 피학대동물의 소유자등에게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보호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하는 경우 또는 소유자등이 경제적 사정상 비용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 ~ 제22조 (생 략)

제23조(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생 략)

②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 ~ 제23조 (현행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제24조(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5조 ~ 제28조 (생 략)

-----.

② -----

----- 영 제5조 -----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 ~ 제29조 (현행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와 같음)